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84 발의연월일 : 2025. 4. 14.

발 의 자:문대림・허성무・윤준병

김영호 · 김한규 · 김 윤

이병진 · 서삼석 · 송옥주

임오경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 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도선사의 통합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하나의 도선구에 다른 도선구를 흡수·통합 시키는 경우 흡수·통합된 도선구의 도선사를 존속하는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존속하는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 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통합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도선사가 흡수·통합된 도선구에 서 존속하는 도선구로 배치되어 도선업무를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도선사 면허는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도선사 면허를 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2(도선사의 통합 도선구
	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하나의 도선구에 다른 도선구
	를 흡수·통합시키는 경우 흡
	수・통합된 도선구의 도선사를
	존속하는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존
	속하는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
	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 면허를 하여
	<u>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통
	합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u>다.</u>